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광수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25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2월 4일

발 의 자 : 김광수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제리, 김기덕, 김정환, 유정희,
송명화, 김경영, 송정빈, 김생환,
이광성, 유 용, 이광호 의원 (11명)

1. 제안 이유

-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,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,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.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고,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함.
-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안내방송을 통해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, 2018년에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, 임산부 10명 가운데 9명은 지하철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음.

-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 의무 및 지하철 보안관이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‘교통약자에 대한 지원’ 조항을 신설. (안 제5조의2)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교통약자에 대한 지원)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.

③ 지하철보안관은 전동차 순찰시 임신부 외의 승객에게 임신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5조의2(교통약자에 대한 지원)</u></p> <p>① <u>대중교통운영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지하철보안관은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